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3020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하동규

피 고 A

변론 종결 2018. 12. 18.

판결 선고 2019.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9,000원 및 그중 32,214,120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8. 27.까지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편인 망 B(2017. 8.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2010.5. 16.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6. 11.부터 12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0. 6. 10. 위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E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의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E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5,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6. 10.부터 2025. 6. 10.까지'로 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5,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전세자금대출'이라 한다), 위 5,600만 원은 C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망인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그 이행한 금액 등 외에도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위 지연손해금률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라. 망인과 피고 및 그의 자녀들은 2010. 6.경 이 사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2010. 11.경 성남시 수정구 F(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11. 21.피고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광주시 G건물 제1층 H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E은행은 대출금의 기한이익상실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2,214,120원을 E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료가 납부된 다음 날인 2018. 6. 11.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8. 7. 9.까지 29일간의 추가보증료 14,880원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200364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필수적인 공간인이 사건 임차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E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으로 지출하고, 그 전세자금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대출행위 및 신용보증약정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832조에 근거하여, 망인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원고와 맺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지급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실제 망인이 이 사건 임차주택의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아 모두 사업자금에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일상가사에 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당초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받았는지 여부, 실제 사업자금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및 자녀들이 이 사건임차주택을 임차하여 적어도 몇 개월간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이 망인과 피고 등 가족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망인과 동행하여 피고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마련에 관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그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229,000원(대위변제금 32,214,120원 + 보증료 14,880원) 및 그중 32,214,1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8. 7. 11.부터 이 사건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8. 8.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아